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

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주세요!

- 12월말 결산 법인의 '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'16.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
 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·납부
 -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

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

	'15년까지		'16년부터
첨부서류 제출	자치단체별		본점 소재 자치단체 ※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
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	없음		있음 ※ 무신고 가산세(20%) 부과
특별징수세액 일괄 환급	불가능		가능 (본점 소재 자치단체) ※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
특·광역시 내 일괄 신고	불가능		가능 (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) ※ 강화군, 옹진군은 개별 신고·납부 (종전과 동일)
결손금 소급공제	세무서, 자치단체별 각각 신청		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
안분명세서 제출	불필요		필요
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	없음		있음 ※ 법인세의 100분의 10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

- **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**
 - 단, 특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(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)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
- **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**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(0.9% 등) 적용
- **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**
 - 특히,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

☎ 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01 과세체계 개편(독립세 전환)

- '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세율 등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.

종전(부가세 방식)
법인세 결정세액 × 부가세율(10%)



변 경 (독립세 방식)
법인세 과세표준 ×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
- 공제·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)

02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

과세표준	속산법		세법상 계산법
	세율	누진공제액	
2억원 이하	1%	-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	2.2%	4,200만원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
03 세액 계산(지방세법 §103조의21)

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	= (과세표준 × 세율) +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+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
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· 감면 ¹⁾ + 가산세 ²⁾ - 기납부세액 ³⁾

1) 조항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. 2)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
3)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

04 제출서류(지방세법 §103조의23)

구분	제출 서류	서식
신고서	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43호
	②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	43호의7
첨부 서류	③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43호의2
	④안분명세서 ('16년부터 추가)	44호의6
	⑤가산세액 계산서	43호의4
	⑥특별징수세액명세서	43호의5
	⑦재무상태표, ⑧포괄손익계산서	
	⑨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
	⑩현금흐름표 (외부감사 대상 법인만)	
	⑪소금공제 환급신청서(해당 법인만)	
		43호의9

※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(42호의4) 제출 필요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·구 세무(재무)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
중 구	본청 760-7240	남구 880-4791, 7460	남동구 453-2381 ~4	서 구	본청 560-4920	강화군 930-3044			
	영종 760-8820				검단 560-4543				
동 구	770-6290	연수구 749-7500	부평구 509-6280	계양구	450-5181 ~5	옹진군 899-2413, 2418			